

예 천 군



군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제1291호 2021. 3. 22.(월)

선 람	기 관 의 장

고 시

-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의 하천공사 허가 및 실시계획 인가 고시(예천군 고시 제2021-25호)

공 고

- 예천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예천군 공고 제2021-442호)
- 분묘개장공고(1차)(예천군 공고 제2021-444호)
- 예천군 예천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예천군 공고 제2021-460호)

회 람									
--------	--	--	--	--	--	--	--	--	--

발 행 예천군 편찬 기획감사실(전화 650-6066)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의 하천공사 허가 및 실시계획 인가 고시

「하천법」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5조에 의거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의 하천공사 허가 및 실시계획 인가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 3. 22.

예 천 군 수

1. 하천공사의 명칭 : 금곡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2. 하천공사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예천군수

나. 주 소 : 경북 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111

3. 사업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및 사유 : 생태하천 복원

- 금곡천의 치수안정성은 물론, 수질개선과 생물서식처 향상을 실현하기 위해 하천구역 내 경작행위 등을 비롯한 인위적 간섭을 최대한 배제하고, 인공적 시설물에 대한 개선을 통해 종적·횡적 연결성을 모색하며, 훼손된 하천의 생태적 기능을 회복시켜 하천환경 및 수질개선 등을 실현하고자 함.

나. 사업개요

하천명 (등급)	사업량 (km)	총사업비 (백만원)	공사기간	사업 시행자
금 곡 천 (지방)	L= 8.715km	2,000	2021. 04 ~ 2023. 12	예천군수

4. 하천공사 시행지역의 위치

시 점	종 점
경상북도 예천군 용문면 원류리	경상북도 예천군 예천읍 생천리

5. 하천공사의 기간 : 2021. 04. ~ 2023. 12.(예정)

6. 수용 또는 사용하려는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 토지 등의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소유자 외의 권리자의 성명 및 주소 [별첨 참조]

7. 실시설계도서 : 예천군 안전재난과 비치 및 열람가능

8. 사업비 및 자금조달계획

구 분	단 위	전 체	연차별 투자계획(백만원)			
			2020년 까지	2021	2022	2022년 이후
사 업 비	백만원	20,000	3,200	2,000	7,400	7,400

9.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예천군청 안전재난과(☎054-650-615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천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예천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예천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22일

예 천 군 수

1. 자치법규명 : 예천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공직자윤리위원회 민간위원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안이 2020. 12. 15. 국무회의 통과하여 2020. 12. 22.에 공포(2021. 6. 23. 시행 예정)됨에 따라 하위 법령의 정비를 하기 위함.

3. 주요내용

예천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조례 개정

연번	조례명	내 용	비 고
1	예천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조례	- 예천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 정비 - 당초 : 5명(민간위원 3명) - 정비 후 : 7명(민간위원 5명)	조례안 제2조

4. 개정조례안 : 별첨

5. 의견제출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4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예천군수(참조: 기획감사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정(안)	수 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 또는 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방문 제출

1) 전자우편(이메일) : ddongho91@korea.kr

2) 주소 : 경북 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111, 예천군청 기획감사실

3) 팩스 : 054-650-6059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예천군청 기획감사실(전화: 054-650-6053)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사항은 예천군 홈페이지(www.ycg.kr) 『열린군정-군정소식-입법예고』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입법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예천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정(안)	수 정(안)	수정사유

예천군 조례 제 호

예천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조(「예천군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의 개정)

예천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5명”을 “7명”으로, “3명”을 “5명”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1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구성 및 선임방법)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u>5명</u> 을 구성하되, 위원장을 포함한 <u>3명</u> 의 위원은 법관,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자 또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중에서, 부위원장을 포함한 2명의 위원은 군의회의원 또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제2조(구성 및 선임방법) ① ---- ----- ----- <u>7명</u> ----- ----- <u>5명</u> ----- ----- ----- ----- ----- -----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분묘개장공고 [1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묘를 개장하고자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께서는 신고 후 개장하시기 바라며, 공고기간 내에 신고가 없거나 개장하지 않는 분묘에 대하여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우리군에서 임의개장 하겠음을 공고합니다.

1. 분묘의 소재지 및 기수

공 사 명	위 치				기수	비고
	군	읍면	리	지번		
호명면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	예천	호명	오천	산25-6	1	

2. 개장사유 : 호명면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 구간내 편입

3. 개장방법

가. 유연분묘 : 연고자 또는 관리인이 협의개장

나. 무연분묘 : 공고기간 종료 후 우리군에서 임의 개장

4. 개장 후 안치장소 : 경북 안동시 풍산읍 본마을길 36-69

사단법인 안동추모공원 납골당

5. 안치기간 : 개장 후 10년

6. 공고기간 : 2021. 3. 22. ~ 2021. 6. 21.(3개월간)

7. 신고 및 문의처 : 예천군 건설교통과 지역개발팀(☎054-650-6562)

8. 신고시 구비서류

가. 신고자(연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를 확인하고 신고 시에는 매장된 분묘와의 관계증명 서류를 지참하여야 합니다.

나. 분묘 연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제적등본, 족보, 가첩 등

9. 기 타 : 개장공고 이후 식별이 곤란하여 누락된 분묘(공사 중 추가 발견 분묘 포함) 및 유연분묘 중 연고자 확인이 불가능한 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2021년 3월 22일

예 천 군 수

예천군 예천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예천군 예천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군민들에게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3월 19일

예 천 군 수

1. 개정 이유

박물관 운영에 관한 경비 지원 규정을 구체화함으로써 박물관 교육 프로그램 참가자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확립하고, 지역 문화 발전과 주민의 문화 향유권 증진을 위해 관람료를 무료화하여 관광객의 방문을 활성화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박물관 교육 프로그램 참가자에 대한 국내·외 박물관 교육 및 행사 등의 참가 실비 지원 (안 제4조의2제2호)

- 박물관 관람료 무료화 (안 제7조)
- 관람료 면제에 관한 조항(제8조) 삭제
- 박물관 관람료에 관한 별표(별표 1) 삭제

3. 개정조례안 : 붙임과 같음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4월 9일까지 아래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예천군수(참조 : 예천군 문화 관광과장)에게 서면이나 전자우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 찬·반 여부의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 및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연락처, 기타 참고사항 등

다. 제출 방법 : 서면, 팩스, 전화, 전자우편, 방문 등

라. 보내실 곳

- 주소 : 우)36826 경북 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111 예천군청 문화관광과
- 전화 : 054-650-8314, 팩스 : 054-650-8319
- 전자우편 : kwbr0928@korea.kr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예천군 예천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견	비고

예천군 예천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박물관 운영에 관한 경비 지원 규정을 구체화함으로써 박물관 교육 프로그램 참가자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확립하고, 지역 문화 발전과 주민의 문화 향유권 증진을 위해 관람료를 무료화하여 관광객의 방문을 활성화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박물관 교육 프로그램 참가자에 대한 국내·외 박물관 교육 및 행사 등의 참가 실비 지원 (안 제4조의2제2호)
- 박물관 관람료 무료화 (안 제7조)
- 관람료 면제에 관한 조항(제8조) 삭제
- 박물관 관람료에 관한 별표(별표 1) 삭제

3. 개정조례안

붙임과 같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조, 제12조
- 「평생교육법」 제16조

나.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과 같음

다. 예산조치 : 2021년 본예산 편성 시 반영(23,500천원)

라. 규제심사 : 기획감사실 의뢰 예정

마. 입법예고 : 3월 중 입법예고 실시

바. 비용추계서 : 미첨부 사유서 붙임

사. 성별영향평가 : 주민복지실 의뢰 예정

예천군 예천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천군 예천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박물관 교육 프로그램 참가자에 대한 국·내외 박물관 교육 및 행사 등의 참가 실비 지원(일비, 식비, 차량지원비, 타 시·군 아카데미 참여 교육비 등)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관람료) 박물관의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제8조를 삭제한다.

별표 1을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조의2(경비 지원 등) 군수는 박물관 교육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학습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의2(경비 지원 등) ----- -----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u>박물관 교육 관련 국내·외의 각종 교육 및 행사 등 참가 실비</u>	2. <u>박물관 교육 프로그램 참가자에 대한 국·내외 박물관 교육 및 행사 등의 참가 실비 지원(일비, 식비, 차량지원비, 타 시·군 아카데미 참여 교육비 등)</u>
3. (생략)	3. (현행과 같음)
제7조(관람료 및 관람권) ① <u>박물관을 관람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의 관람료를 납부하여야 한다.</u>	제7조(관람료) <u>박물관의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u>
② <u>이미 납부한 관람료는 관람전에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전액 반환할 수 있다.</u>	
③ <u>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관람자로부터 별도의 관람료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군수와 사전협의하여야 한다</u>	

다.

1. 예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이 주최 또는 주관하여 전시
를 개최하는 경우

2.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
가 전시를 개최하는 경우

④ 관람권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른관람권(만19세 이상~만
64세 이하인 사람이 구매하는
관람권을 말한다)

2. 청소년관람권(만13세 이상~
만18세 이하인 사람이 구매하
는 관람권을 말한다)

3. 어린이관람권(만7세 이상~
만12세 이하인 사람이 구매하
는 관람권을 말한다)

4. 단체관람권(20명 이상이 입
장할 시 구매하는 관람권을
말한다)

제8조(관람료의 면제)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게는 관람료를 면제한다.

1. 국민·외교사절단 및 그 수
행자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

<삭 제>

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

3.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등록장애인으로서 장애
인 등록증을 소지한 사람(장애
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동행하는 보호자 1
명 포함)

4. 하사 이하의 군인(의무경찰,
경비교도, 공익근무요원 포함)

5.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공무원

6. 만6세 이하 영유아 및 만65세
이상 노인

7. 유물을 기증하거나 위탁관리
하는 등 박물관 발전에 기여
한 자와 그 가족

8. 군이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박물관 행사에 초청받은 자

9. 단체의 인솔 및 안내를 목적
으로 하는 교원 또는 관광안내사

10. 「다복 가정 희망카드」를
소지한 가정의 세대원

11.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박물관과 미술관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박물관과 미술관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문화·예술·학문의 발전과 일반 공중의 문화향유 및 **평생교육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2조(설립과 운영)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회의 박물관자료 및 미술관 자료의 구입·관리·보존·전시 및 지역 문화 발전과 지역 주민의 문화향유권 증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기준에 따라 박물관과 미술관을 설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박물관과 미술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평생교육법】

제16조(경비보조 및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과 다른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평생교육진흥사업을 실시 또는 지원할 수 있다.

1. 평생교육기관의 설치·운영
2. 제24조에 따른 평생교육사의 양성 및 배치
3.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

4. 그 밖에 국민의 평생교육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등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을 위한 평생교육진흥사업을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감 또는 지역교육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예천군 예천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박물관 운영에 관한 경비 지원 (안 제4조의2제2호)

2. 미첨부 근거 규정

『예천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

3. 미첨부 사유

박물관 교육사업의 일환으로 나라사랑 아카데미(강의 및 현장답사 등)
운영에 드는 준비물 및 부대비용 등에 필요한 예산이 23,500천원으로
예상됨

4. 작성자

문화관광과 지방행정사무관 장덕철 (054-650-6390)

관람료(제7조 및 제8조 관련)

(단위 : 원)

구 분	개 인			단 체(20인이상)		
	어 른	청소년	어린이	어 른	청소년	어린이
일 반	2,000	1,500	1,000	1,500	1,000	500
예천군민	1,500	1,000	500	적용하지 아니함		
관람료 면제	• 국빈·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 • 국가유공자 •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동행하는 보호자 1명 포함) • 하사이하의 군인(의무경찰, 경비교도, 공익근무요원 포함) •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공무원 • 만6세 이하 영유아 및 만65세 이상 노인 • 유물 기증·위탁관리자 등 박물관 발전에 기여한 자와 그 가족 • 예천군이 박물관에서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에 초청받은 자 • 단체의 인솔 및 안내를 목적으로 하는 교원 및 관광안내사 • 다복가정희망카드를 소지한 가정의 세대원					
비 고	• 어 른 : 만19세 이상 ~ 만64세 이하 • 청소년 : 만13세 이상 ~ 만18세 이하 • 어린이 : 만7세 이상 ~ 만12세 이하 • 예천군민 : 주민등록을 예천군에 두고 있는 사람으로 신분증을 소지한 자					

〈 의안 소관 부서명 〉

문 화 관 광 과	
연 락 처	650-8314